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김소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소희의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자 함.

또,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현행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환경부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상향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의 명칭 또한 ‘기후’환경부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임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2023년이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온도가 높았던 해로 기록된

가운데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주요 온실가스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는 등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이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총괄·조정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2022.3.25.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종전의 법률과 비교하면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도입(저탄소→탄소중립)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순배출 ‘영(0)’으로 설정하였고, 온실가스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측면이 있음. 현재 동 법률 체계에 따라 2023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각 부처에서는 동 기본계획에 규정된 82개 단위 27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바, 일정 기간 현행 체계를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총리급 기후환경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 독일은 에너지 비용 급등, 제조업 경쟁력 붕괴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대응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로 되돌린 사례를 감안할 때,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이 중요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자원부분과 원전수출이 산업통상부에 남은 것은 아쉬움.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부분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와 환경 기능 융합 시 에너지 기능 축소가 우려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면 에너지·환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와 원전 기능이 3개 부로 쪼개지고 있는 문제, 전기감독청 및 전력감독청 등 중립적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원전생태계 진흥 필요가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같은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규제부처에서 에너지를 소관하게 되면 전력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독일·영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기후 분야를 재분리한 사례가 있음.
- 기후에너지부가 생기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바, 보

강조치가 필요하며,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